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규정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4호)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형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형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범위, 조종면허 등을 규정

특수건설기계 (대형고소작업차)	건설기계의 범위	정격하중이 0.5톤 이상이고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며 굴절식 붐 구조로 자주식인 것
	구조·규격 표시방법	굴절식 붐, 작업대 등을 갖춘 기계가 이에 속함. 규격은 최대작업높이와 최대작업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정격하중(t)으로 표시
	조종면허	도로운행 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및 작업 시는 기중기 조종사 면허
	등록번호표의 표시	기종별기호표시: 26 등록번호표시: 기종별 기호표시 (26)다음에“서”라는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예:26서1234)
	건설기계관리법규의 적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중기”와 “터널용고소작업차”에 준하여 적용하고

		“기중기”와 “터널용고소작업차”의 안전기준을 준용할 수 없는 사항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음
--	--	---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deuflex@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